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. 12. 14.(목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1. 7. 김경이의원 외 11명 발의 (의안번호 228호)

나. 회부일자: 2023. 11. 1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【2023. 11. 28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경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여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고자 제정함

나. 주요내용

- 업무추진비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기본원칙, 집행기준, 사용제한(안 제3조 ~ 제5조)
- 사용내역 공개, 정보공개 범위(안 제6조 ~ 제7조)
- 교육 및 점검 등,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(안 제8조 ~ 제9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1)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2)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3)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4),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
 - 기간 : 2023. 11. 8. ~ 2023. 11. 13.
 - 의견 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한상규)

- 본 조례 제정안은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탄력적 운용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,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음. 이 때문에, 행정기관뿐 아니라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.
-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,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, 기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관련규정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※ 관계법령

1)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업무추진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.

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

업무추진비: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, 의회사무기구의 장,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,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

나.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: 지방의회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

2. "회계관계공무원"이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 제3조(업무추진비의 집행)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4. 21., 2015. 4. 1.>

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2) 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

제64조(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고금 관리법」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7.26.>

3)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1. 업무추진비 공개기준

-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.
 -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, 부기관장, 실·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(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)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
 -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*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
 - * 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
 -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, 예결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
- 항목은 사용자, 일시, 장소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(신용카드, 제로페이, 현금 등), 비목으로 구분한다.
-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.
 - 지방자치단체(지방의회 포함)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(규칙)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.
-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.

4)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5조

제5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 의원은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. 12. 14.(목)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1. 7. 이호건의원 외 8명 발의 (의안번호 229호)

나. 회부일자: 2023. 11. 1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【2023. 11. 28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호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(시행 2022. 5. 19.) 제정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(시행 2022. 6. 22.)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 충돌방지 규정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
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을

신설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

- 의원에 대한 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함(현행 제4조,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, 제10조, 제15조,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삭제).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 (안 제2조제1호, 제10조의3, 제13조제2항, 제18조제3항).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3)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 (안 제11조제3항제1호 및 현행(별표 1 삭제)).
- 의장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7조제2항).
- 의원에 대한 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33조제2항제5호).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1),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2)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」3)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
 - 기간 : 2023. 11. 8. ~ 2023. 11. 13.
 - 의견 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한상규)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이 제정('21.05.18.), 시행 ('22.05.19.)됨에 따라 조례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,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청탁금지법 시행령”)의 개정 ('22.01.05)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,
 - 「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」제4조 및 14조에 따라 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 제4조,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, 제10조, 제13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제15조 (직무관련자 거래등의 신고)조항을 삭제 하고
-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[별표 1]에서 설날·추석 거래간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품 가액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로 상향 하였으며,
- 의장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(안 제17조 제2항) 의원에 대한 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33조제2항제5호)으로서 사건발생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추가적으로 명문화 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중복하여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위법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 것은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※ 관계법령

1)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

제23조(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)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.

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4조,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삭제 <2022.6.2.>

제10조(공용재산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 등) 삭제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10조 삭제 <2022.6.2.>

제10조의3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

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·요구를 하는 행위
2. 의회의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(轉嫁)하거나 지연하는 행위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·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

가, 성북구의 집행기관
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성북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

다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성북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

4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·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

※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10조의3 개정

제13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
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신고해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
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<삭제>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14조제3항 삭제<2020.4.7.>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14조 개정(2020.4.7., 2022.6.2.)

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19조제3항 “~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”<개정 2019.12.31.>

2)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

제4조의2(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) ~ 제4조의5(수의계약 체결 제한) 삭제

-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삭제

※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)

3)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」(별표1)

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

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3만원
2. 경조사비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
3. 선물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"농수산물가공품"이라 한다)은 10만원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한다.